



징검다리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현재 센터에서는 방문객 출입금지 및 어르신들의 면회, 외출, 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요양시설 감염 유행에 따라 어르신 안전을 위한 조치 이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를 통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회 금지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진행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영상통화는 센터로 통화 시간을 예약해주시면 보호자님께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보호자 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설 생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음식은 1회분의 양과 목넘김이 쉬운 부드러운 것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조리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음식은 생활실 반입을 금지하며, 가져오실 경우 당일 드실 것만 허용합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져오신 음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와 화재안전예방을 위해 수급자와 직원에게 그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계약의사 진료안내

매주 화요일 혈당검사 진행

3일 / 17일

정신과진료 (가람신경정신과-김동욱원장님)



이달의 주요일정 안내

24일

쉐프특식(삼성Welstory 지원)



주간 프로그램 안내

요일	프로그램명	진행
월	웃음치료	센터 내부 진행
화	웃음치료	센터 내부 진행
수	종교활동	센터 내부 진행
	미술치료	센터 내부 진행
목	음악감상	요양보호사
	문화활동	센터 내부 진행
	원예치료	센터 내부 진행
금	음악교실	센터 내부 진행
	문화활동	센터 내부 진행
일	종교활동	센터 내부 진행
기타	발마사지	요양보호사(주 1회 이상)
	건강체조	요양보호사(매일)
	물리치료	조기환 물리치료사

2021년 시설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1년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수가는 2020년 대비 1.28% 인상되었으며,
1월 1일자로 변경되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1일)	노인요양시설	
	현행	2021년(증가액)
1등급	70,990	71,900(+910)
2등급	65,870	66,710(+840)
3,4등급	60,740	61,520(+780)

구분 (30일)	일반	경감 대상자	
	급여20%+비급여=총액	급여12%+비급여=총액	급여8%+비급여=총액
1등급	431,400+300,000=731,400	258,840+300,000=558,840	172,560+300,000=472,560
2등급	400,260+300,000=700,260	240,150+300,000=540,150	160,100+300,000=460,100
3,4등급	369,120+300,000=669,120	221,470+300,000=521,470	147,640+300,000=447,640

○ 식재료 및 간식비 안내(비급여)

구분	1일	30일
식재료비 간식비	3,000원 × 3식 = 9,000원 500원 × 2회 = 1,000원	9,000원 × 30일 = 270,000원 1,000원 × 30일 = 30,000원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동명노인복지센터(☎02-875-27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정보

○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보호자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설은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자료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명노인복지센터 노인인권보호지침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www.noinboho.or.kr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세대가 행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그러나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생활시설 수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학대 추이: ('08) 55건(2.3%) → ('13) 251건(7.1%), 4.5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 실버타운, ‘노년의 안식처’ 혹은 ‘빛 좋은 개살구’ <SBS TV 2014. 12. 23>
- 인권위, ‘폭행피해 방치’ 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권고 <한국경제 2014. 10. 28>
- 학대 받는 노인 10명 중 6명, 수년간 지속적 피해 입어 <경향신문 2014. 10. 02>
-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5년 새 5배 급증 <연합뉴스 TV 2014. 08. 25>
- 치매노인 학대 5년 새 3배 <헤럴드경제 2014. 05. 29>
-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테이프로 결박한 복지사 검거 <국민일보 2014. 03. 19>

※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묵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대소변 냄새, 땀, 염증, 욕창 등이 발생됨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3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중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원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동명노인복지센터